

거창향교 태양광 자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
의안 번호	2021 - 10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자	거창군수
-----	------

1. 제안이유

-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중 ‘주민복지형 태양광 조성 사업’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,
- 거창 향교 냉난방 시스템 설치 관련, 전기용량 증설 및 전기요금 증액에 따른 운영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추진개요

- 사업명 : 거창 향교 태양광 자가 발전시설 설치사업
- 사업자 : 거창향교 전교 박정제
- 사업기간 : 2021년 9월 ~ 11월(3개월간)
- 사업량 : 12kw
- 사업비 : 25,200천원(공모사업비 90%, 자부담 10%)
- 기대효과 : 2,500천원/년 전기요금 절감

나. 추진사항

- 2020. 10. : 2021년 국비 공모사업 선정(경제교통과)
- 2021. 5. : 도시공원 점용 허가(산림과)

다. 재산의 표시

위 치	면 적	태 양 광 설치면적	설치 용량	사용허가신청자
거창읍 가지리 318-1(유지)	7,779m ²	60m ²	12kw	거창향교 전교 박정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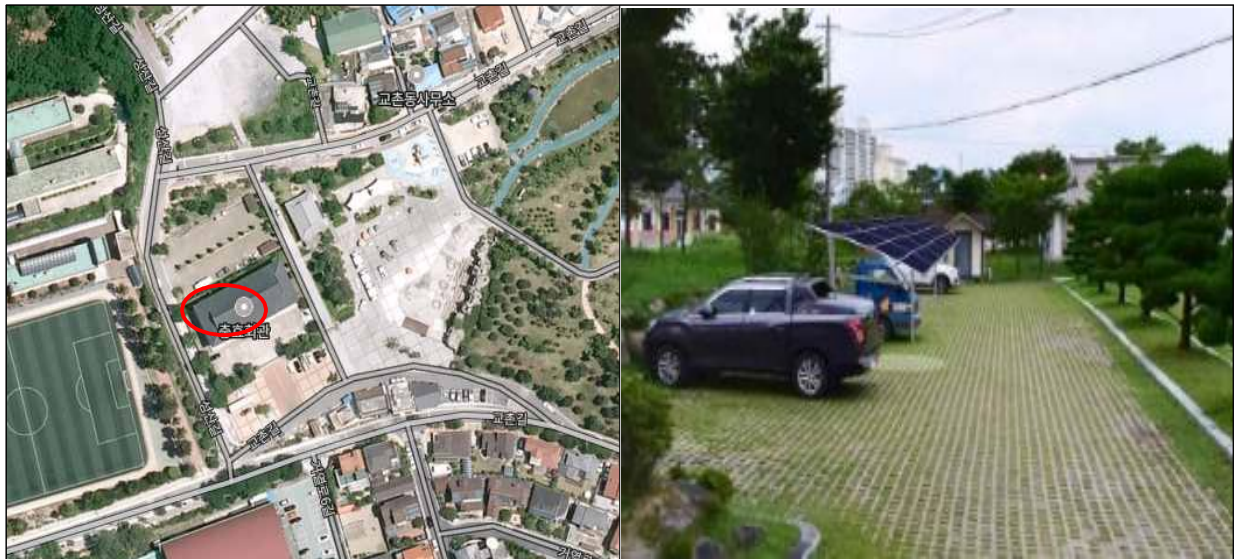
라. 향후 추진계획

- 2021. 11. : 공사완료 후 보조사업 정산(경제교통과)

3. 관련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제20조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촉진법」 제26조
- 「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」 제12조

4. 위치도 및 현장사진(조감도)



주소 :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18-1(지목 : 유지)

관 련 법 령

<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>

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·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<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>

제26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**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**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(隨意契約)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제31조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로부터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.

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